

의안번호	126
발의일자	2022. 11. 17.
회부일자	2022. 11. 22.

제336회 도의회 정례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2. 11. 28. (월)

『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장 채 식

『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춘우 의원 외 9명

2. 개정이유

- 경상북도 농업명장을 선정함에 있어 ‘농업 기술 발전 및 농업 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현실을 반영’ 하여 작물별 영농규모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
- 이에 과수·채소·화훼분야 등의 영농규모를 보다 세분화하여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 「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」를 「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」로 제명 변경
- 나. 별표의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(별표)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## 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2. 11. 22. ~ 11. 27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107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## 6. 검토의견

### 가. 본 조례안은

-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기준 중 추천 분야별 영농 규모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, 기존보다 작목별로 세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

### 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기존 조례명 「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」를 「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」로 변경함  
⇒ 조례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- 별지를 개정하여 ‘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’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 
⇒ 개정 조례안에 따른 대상작물 및 영농규모 변화는 다음 페이지 표를 통해 비교 제시함

# 개정 조례안에 따른 「경북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 변화」

농업분야(종류)	기존 대상작물	개정 대상작물	기존 규모	개정 규모	비 고
식량작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벼</li> <li>· 밭작물(콩, 보리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벼</li> <li>· 밭작물(콩, 보리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벼 : 3ha이상</li> <li>· 밭작물 : 3ha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벼 : 5ha이상</b></li> <li>· 밭작물 : 3ha이상</li> </ul> <p>⇒ <b>벼농사의 기계화로 규모 상향 필요</b></p>	신농법을 도입·개발·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
과수·채소·화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수(사과, 포도, 배, 복숭아, 자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수(사과, 포도, 배, 복숭아, 자두 등)</li> </ul> <p>⇒ '등' 추가해 과수의 범위를 확대함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 수 : 1.5ha 이상</li> <li>· 노지채소 : 2.0ha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 수 : 1.5ha 이상</li> <li>· <b>채소 : 2.0ha 이상</b></li> </ul> <p>⇒ <b>채소로 용어 변경</b></p>	신농법을 도입·개발·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노지채소(고추, 마늘, 양파, 수박)</li> <li>· 시설채소(풋고추, 참외, 딸기, 오이, 토마토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채소(고추, 마늘, 양파, 수박, 참외, 딸기, 오이, 토마토 등)</b></li> </ul> <p>⇒ <b>노지채소와 시설채소 구분 삭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설채소</li> <li>- 유리·경질온실 0.2ha(600평) 이상</li> <li>- 비닐하우스 0.6ha (1,800평)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시설 채소·과수</b></li> <li>- 유리·경질온실 <b>0.2ha</b> 이상</li> <li>- <b>비닐온실·비가림시설 0.6ha 이상.</b></li> </ul> <p>⇒ <b>비닐온실과 비가림시설로 세분화</b></p> <p>⇒ <b>기존 시설채소에 시설 과수를 추가(시설과수의 경우 재배면적이 적음)</b></p>	신농법을 도입·개발·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화훼(장미, 백합, 국화 카네이션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화훼(장미, 백합, 국화 카네이션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유리·경질온실 0.1ha(300평)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유리·경질온실·비닐온실 0.1ha 이상</b></li> </ul>	

<p><b>농산물 가공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산물 가공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산물 가공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산물을 가공·생산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6차산업 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공이 있는 자</b></li> </ul>	<p>품목별 신기술을 도입·활용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</p>
<p><b>특용작물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약용작물 (천궁, 하수오, 산약, 두충 등 35종)</li> <li>• 유지작물(참깨 땅콩 등)</li> <li>• 섬유작물(대마 등)</li> <li>• 인삼, 양잠</li> <li>• 버섯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약용작물(천궁, 하수오, 산약, 두충 등)</li> <li>⇒ 35종을 삭제하여 작물범위 확대</li> <li>• 유지작물(참깨 땅콩 등)</li> <li>• 섬유작물(대마 등)</li> <li>• 인삼, 양잠</li> <li>• 버섯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약용유지섬유: 1ha 이상</li> <li>• 인삼 : 1ha 이상</li> <li>• 양잠 : 10상자 이상</li> <li>• 버섯류: 균상 0.5ha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약용유지섬유: 1ha 이상</li> <li>• 인삼 : 1ha 이상</li> <li>• 양잠 : 10상자 이상</li> <li>• 버섯류: 균상 0.5ha이상</li> </ul>	<p>신농법을 도입·개발·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</p>
<p><b>축산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우</li> <li>• 젖소</li> <li>• 양돈</li> <li>• 양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우</li> <li>• 젖소</li> <li>• 양돈</li> <li>• 양계</li> <li>• 양봉</li> <li>• 곤충 및 중소가축</li> <li>⇒ 양봉 및 곤충산업도 경북도에서 중점 육성 중인 산업임(추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우 : 50두 이상</li> <li>• 젖소 : 50두 이상</li> <li>• 양돈 : 1,000두 이상</li> <li>• 양계 : 3만수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우 : 50두 이상</li> <li>• 젖소 : 50두 이상</li> <li>• 양돈 : 1,000두 이상</li> <li>• 양계 : 3만수 이상</li> <li>• 양봉 : 100군 이상</li> <li>• 곤충 및 중소가축 : 도 사육실태조사 결과 평균 사육 규모 이상</li> </ul>	<p>신농법을 도입·개발·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</p>

#### 다. 종합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경북 농업명장」을 선정함에 있어 그 품목과 영농규모 기준을 개정하여 현장의 실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
- 기계화, 정보화 등으로 농업기술이 세분화 되고 있으며,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재배형태에 따라 규모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
- 또한 경북 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재배 형태가 다양하므로 단순히 영농규모로 소득이나 농업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실정임
-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경북 농업 실정에 맞추어 명장 선정 기준을 변경한다면 많은 농업인에게 동기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## I

## 추진현황

## 1 추진배경

 **농업경쟁력 제고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응**

- 국가 간 FTA 체결,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안보 중요성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보급 필요성 대두
- 품목별 신기술 농업인을 발굴 「**경북 농업명장**」으로 선정하여, 우수한 영농기술을 도내 농가에 전파

 **신기술 보급으로 농업분야 고부가가치 창출**

- 경북 농업명장 현장순회교육을 통한 농업 기술 보급·확산
- 신기술을 고부가가치로 창출, 부자마을 조성 및 역대농가 육성

 **청년들의 일터 농촌, 사람중심 농업 구현**

- 청년 창업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농촌 내 젊은 인력 육성
- 신기술 보유 농업 응도로 탈바꿈, 농업의 선진화에 앞장

## 2 관련법령

 **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**

(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)

 **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조례 제3조**(명장의 선정)

- ① 경상북도지사는 도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.
- 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식량작물분야    2. 과수·채소·화훼분야    3. 특용작물분야
  4. 축산분야        5. 농산물가공분야
  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## II 선정계획

### 1 선정개요

#### □ 세부 선정계획

- 선정인원 : 2명(매년)
- 추천분야 : 5개분야 20여개 품목
  - ① 식량작물분야(벼, 밭작물 등)
  - ② 과수·채소·화훼분야(과수, 노지채소, 시설채소, 화훼 등)
  - ③ 특용작물분야(약용작물, 유지작물, 섬유작물, 인삼, 양잠, 버섯류 등)
  - ④ 축산분야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, 양봉 등)
  - ⑤ 농산물가공분야(6차산업 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)
- ※ 추천분야는 품목별 신청기준을 정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임
- 시상 : 도지사 인증패 수여 \* **농업인의 날('22.11.11.) 시상 예정**
- 지원내용
  - ① 해외 선진농업 연수 기회 제공
    - 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외연수는 잠정 유보(향후 별도 실시 계획)
  - ② 농업명장 기술교육장 운영 사업비 지원 : 20백만원(농가당 10백만원)
    - ※ 단, 교육·체험장 설치(신축, 리모델링)와 영농자재 구입(비료, 농약) 등 소모성 경비 지출 불가

#### □ 연도별 선정현황('02 ~ '21년)

##### < 경북 농업명장 연도별 선정 현황(40명) >

연도	02	03	04	05	06	07	08	0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
품목	사과	포도	참외	버섯	사과	쌀	버섯	복숭아	양돈	토마토	딸기	오미자	고추	양돈	시설오이	한우	양봉	딸기	포도	한우
	양돈	양계	누에	인삼	양돈	한우	낙농	한우	인삼	마늘	배	참외	살구	토종별	버섯	사과	산양삼	표고버섯	사과	시설오이

☞ 양돈4, 버섯4, 한우4, 사과4, 참외2, 인삼2, 딸기2, 토종별1, 양봉1, 쌀1, 배1, 포도2, 마늘1, 복숭아1, 토마토1, 오미자1, 누에1, 양계1, 낙농1, 고추1, 살구1, 시설오이2, 산양삼1

## 2 선정기준

### □ 선정(자격)기준

-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
- 농업·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
-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

### □ 추천방법

- 「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」에 따라 시·군 자체 심사 후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도에 추천

### □ 추천 제외대상
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  - 기타 각종 비리,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선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※ 10년 미만 영농종사자 추천 제외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검증)

### 3 추진일정

#### □ 추진체계도



#### □ 세부 추진일정

- '22년 경북 농업명장 선정계획 통보(도 → 시군) : 7. 22.(금)
- 시군 자체심사 및 후보자 추천(시·군 → 도) : 8. 26.(금) 까지
  - 시·군 홈페이지, 반상회보 등 농정 홍보매체에 게재
  -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는 반드시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직접 신청은 불가
  - 시군 자체심사(우선순위 후보자 1인 최종 추천)

##### < 시군 심사반 구성 및 운영 - 3인 이상 >

- ❖ 반 장(1명) : 시·군 농정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
- ❖ 반 원(2명) : 해당 업무담당자,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등

- 서면 및 현지심사(도 농업정책과) : 8. 29.(월) ~ 9. 30.(금)
  - 시군 추천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 : 8. 29.(월) ~ 9. 16.(금)
    - ※ 관련서류(신청서, 근거서류 등) 미제출시 2차 현지심사 대상에서 제외
  -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 : 9. 19.(월) ~ 9. 30.(금)

##### < 도 현지 심사반 구성 및 운영 - 3인 2조 >

- ❖ 1조(3명) : 농촌인력복지팀장, 해당실과 업무담당자, 외부심사위원
- ❖ 2조(3명) : 농촌인력복지 업무담당자, 해당실과 업무담당자, 외부심사위원

- 경북 농업명장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: 10월중
  - 심사결과를 경북농업명장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상자 선정
    - ※ 경북농업명장 선정심의위원회 구성(8명 이내)
      - 품목별 행정·지도공무원 : 6명 이내
      - 외부전문가(대학교수, 농업관련 전문가 등) : 2명 이내

- 시상(11.11. 농업인의 날) 및 사업비 교부 : 11월중

## 참고2

### 경상북도 '농업명장 육성 지원' 사업설명서 (농축산유통국, 일부발췌)

<h1>농업명장 육성 지원</h1>	세 부 사 업	농업명장육성지원
	통계목	자치단체경상보조금

#### □ 사업목적

- 신기술 영농을 통하여 가장 모범적이며 성공적인 농가를 품목별 농업명장으로 선발
- 농업경영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술강사로 위촉하여 우수한 영농기술 전파

#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0 ~ 12월
- 사업대상 :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자
- 사 업 량 : 2명
- 시행방법 : 시군보조
- 사업내용 : 농업명장 전문기술교육장·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
- 예 산 액 : 20백만원(전액 도비)
  - 부담비율 : 도비 100%

#### □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 원 별	총사업비	기투자	2022 투자			2023계획	2024이후
			계	당초	추경		
총 계	40	0	20	20	0	20	0
<b>예 산 액</b>	<b>40</b>	<b>0</b>	<b>20</b>	<b>20</b>	<b>0</b>	<b>20</b>	<b>0</b>
국 비	0	0	0	0	0	0	0
도 비	40	0	20	20	0	20	0

## □ 편성근거

- 지원근거 :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조례 제7조(명장의 예우 및 지원)
- 산출근거 : 10백만원 × 2명 = 20백만원
- 전년대비 증감사유 : 해당없음

## □ '22년 9월까지 추진실적

- 집행실적 : 농업명장 선정완료 후 사업비 교부(11월중)
- 추진상황 : 선정심의회 개최(22. 10. 20.) 및 최종선정 완료(2명)

## □ '23년 추진계획

- 2023. 7월 : 농업명장 선발계획 지침 시달(도 → 시·군)
- 2023. 8월 : 후보자 추천(시군 → 도)
- 2023. 9~10월 : 서류·현지심사, 선정심의회 개최 및 최종선정(도)
- 2023. 11월 : 사업비 교부 및 인증서 수여식(농업인의 날)
- 2023. 11~12월 :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

## 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민간위탁 동의	출자출연 동의	공유재산 심의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